

# 정 관 시 행 세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교법인 꽃동네현도학원 정관 제81조 규정에 따라 정관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 ① 정기이사회는 연 2회로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안에 1회, 매 회계연도 마감 후 2개월 안에 1회 개최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록 작성)** 이사회의 회의록은 법인사무국장이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4조(회계)** 법인 및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 5 조(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학교법인 꽃동네현도학원 정관 제26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1. 학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제 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설비 및 시설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이사회의 심의·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법인사무국)** ① 법인사무국의 분장업무 및 운영에 관한 제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법인사무국 직원의 인사는 법인의 인사규정을 준용하고, 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3.26.)

**제7조(수익사업체)** ① 이 법인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체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법인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체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8조(정년)** 교직원의 정년은 각 기관의 인사규정을 적용한다. 단, 특수학교의 교직원은 교육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징계위원회)** 이 법인의 정관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① 교원 징계위원회는 이 법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사무직원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인에 두며, 징계위원은 징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3.26.)

**제10조(재심위원회)** 법인 및 학교의 일반직원재심위원회는 법인에 두되, 정관이 정한 교원징계위원회를 준용한다.

**제11조(세칙의 개정)** 이 시행세칙 개정은 이사장의 제안으로 이사회 의결로 행한다.

####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차 개정)